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서동호 소유물건(2025타경11489)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법보좌관 최양현

감정평가서번호: 기마25-038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마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김종복

감정평가액	일억사천칠백만원정(₩147,000,000.-)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법보좌관 최양현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3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서동호 (2025타경11489)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4.14	2025.04.07 ~ 2025.04.14	2025.04.14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아파트	1세대 이	아파트 하	1세대 여	-	147,000,000
	합계				백	₩147,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27 소재 '천안쌍용중학교' 북측 근거리에 있는 천안주공아파트 410동 2층 205호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민사신청과 경매3계 2025타경 11489 부동산강제경매)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임.

2. 감정평가의 대상 물건

1. 구조 및 면적

소재지 및 명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14 주공아파트 제410동 제2층 제205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봉서산샛길 65(쌍용동)	규모	17동 1,650세대 대지면적 69,164.5㎡ 건축연면적 110,620.663㎡ 410동 연면적6,910.961㎡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피씨조 평스라브지붕	건물의 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건물의 층수	지하 1층, 지상 15층	사용승인일	1998.04.06.		
기호	층·호	용도	전유면적(㎡)	공용면적(㎡)	대지지분(㎡)
1	410동 2층205호	아파트	59.71	17.0784	47.96

* 공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의 주 공용부분 합계임.

2. 토지이용계획 및 기타 공법상 관계

기호	내용
1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쌍용3지구), 중로1류(폭 20m~25m)(2023-08-01)(중로 1-16)(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14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늘사랑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예랑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기호	내용
	상대보호구역(천안쌍용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천안용암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늘사랑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04월 14일임.

나. 현장조사 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2025년 04월 11일에 귀 제시목록과 공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물건에 대하여 공부와 부합 여부, 의뢰목록과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 등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 등을 조사하였음.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의 조건

가.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당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감정평가의 조건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②항에 따른 별도 기준은 없으며 물건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다. 기타사항

본건은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본건의 내부 상태는 표준적인 설비 및 이용상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황등을 기재하고 평가하였으며, 호별 위치는 현황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 감정평가 방법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및 감정평가 방법

가.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 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나.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제3조(기준)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①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이하 “감정평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제6조(현황기준 원칙)

1.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3.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조건을 붙일 때에는 감정평가조건외의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 21.>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조건외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제7조(개별 물건의 기준 원칙)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0조(대상 물건의 확인)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제11조(감정 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개정 2022. 1. 21.>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제12조(감정 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 21.>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1. 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4., 2016. 8. 31., 2022. 1. 21., 2023. 9. 14.>
 1. 비교표준지 선정
 2. 시점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제1조(건물의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구분 소유) [전문개정 2010. 3. 31.]

다.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과 합리성 검토

가. 감정평가법의 적용(구분소유권)

■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유사 거래사례를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보정, 비교하여 구분소유권의 가액을 구하는 거래사례 비교법

■ 대상 구분소유권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수익 환원법

■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등으로, 건물은 원가법으로 1동 전체의 가격을 구한 후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요인을 반영하여 대상 구분소유권에 배분하는 방법 등이 있음.

나. 대상 물건에 적용한 평가법과 합리성 검토

대상 물건은 아파트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본건의 감정평가는 인근지역 내 유사한 구분건물의 일반적인 거래사례와 위치, 입지조건, 부근상황 및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성 등 제반 가격 형성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평가하는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격으로 평가하였고,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비준가격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②항에 의하여 다른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구분건물의 특성상 토지, 건물 각각의 가격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고 본건 및 인근의 적정한 임대사례의 포착에 어려운 점 및 환원이율 등 많은 주관적요인이 개입되어 수익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곤란하다 판단되어, 단서규정에 의거 부득이 주된 방법인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격으로 평가하고,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선례 등 참고 가격자료를 통해 비준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다. 대상 물건의 확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본건의 면적, 구조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등의 공부를 기준 하였으며, 위치 확인은 건축물대장상 현황도 및 호별 표식에 의하였음.

III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1. 비교사례의 선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AIS 기준)

가.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출처 : 한국부동산원 감정정보체계(KAIS))

사례	소재지 (건물명)	동 호수	전유면적(m ²)/ 대지면적(m ²)	거래금액(원)	용도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단가(m ²)		
A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14 주공아파트	410동 90*호	59.71 (47.96)	154,000,000	아파트	2024.07.20 (1998.04.06.)
				2,579,132		
B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14 주공아파트	410동 140*호	59.71 (47.96)	145,000,000	아파트	2025.03.01 (1998.04.06.)
				2,428,403		
C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14 주공아파트	411동 120*호	59.71 (47.96)	154,000,000	아파트	2024.11.24 (1998.04.06.)
				2,579,132		
D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14 주공아파트	410동 30*호	59.71 (47.96)	148,000,000	아파트	2024.09.28 (1998.04.06.)
				2,478,646		

나. 비교사례의 선정

비교적 본건과 위치적, 물적, 유사성이 높고 거래상 특이사항이 없는 거래 사례 중 거래사례 A를 선정하였음.

다. 시세 수준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14 주공아파트 전유면적 59.71m²은 155,000,000원 ~ 150,000,000원 수준임.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결정의견	본 비교사례는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매매사례로 판단됨.
사정보정치	1.00

3. 시점수정

가. 본건은 주거용 구분건물(아파트)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지가변동률, 한국은행에서 조사 발표한 생산물가지수는 본건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미약한 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중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적용 하였음.

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구분	매매가격지수							
천안시 서북구	기준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2024년	98.8	98.4	98.2	97.9	98.0	97.8	97.9
	2025년	97.4	97.3	-				

(2)기간

구분	거래시점	기준시점	비고
거래사례A	2024.07.20	2025.04.14	아파트

(3)시점수정치 계산

	구분	가격지수	비고
계산식	2024.07.20	97.8	거래시점(적용: 2024.06.지수)
	2025.04.14	97.3	기준시점(적용: 2025.02.지수)
	시점수정치	0.99489	$97.3 / 97.8 \approx 0.99489$
적용 시점수정치	0.99489배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지역별/월별 매매가격지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기준시점 : 2025.04.14. 2025년 3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발표 이전 이므로 2025년 02월 지수를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시점수정치 결정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함.

4. 지역요인의 비교

결정의견	본건은 표준지와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

5.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가. 가치형성요인 비교표

조 건	개 별 요 인 세 향 목	검토의견	격차율	
			사례	본건
단 지 외 부 요 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동일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바 단지 외부요인은 사례와 본건이 대등함.	1.00	1.00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단 지 내 부 요 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동일 단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바 단지 내부요인은 사례와 본건이 대등함.	1.00	1.00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호 별 요 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본건은 사례와 비교하여 층별 및 라인별 효용 등 호별요인은 열세임(15층 기준). $2\text{층}/9\text{층} = 103/107 \approx 0.96261$	1.00	0.96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 타 요 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래의 동향 등에서 유사함.	1.00	1.00
개별요인 비교치			1.00	0.96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서울지역의 아파트 층별 효용비율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지역의 아파트 층별 효용비율 산정에 관한 연구”의 서울 지역 아파트의 최고층에 따른 층별 효용비율은 아래와 같음.

1층=100

5층		12층		15층		20층		25층	
								25	108
								24	109
								23	109
								22	110
								21	111
						20	108	20	111
						19	110	19	111
						18	111	18	111
						17	111	17	111
						16	112	16	111
				15	105	15	112	15	111
				14	107	14	112	14	111
				13	108	13	112	13	111
		12	107	12	108	12	112	12	110
		11	108	11	108	11	112	11	110
		10	111	10	108	10	111	10	109
		9	111	9	107	9	111	9	109
		8	112	8	107	8	111	8	108
		7	109	7	107	7	109	7	108
		6	109	6	107	6	108	6	107
5	104	5	109	5	106	5	108	5	104
4	105	4	109	4	105	4	107	4	103
3	105	3	107	3	105	3	107	3	101
2	102	2	105	2	103	2	105	2	101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 한국부동산연구원 서울지역의 아파트 층별 효용비율 산정에 관한 연구, 2007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비준가격

기호	사례전유면적당 단가(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가치 형성 요인	산정 단가 (원/㎡)	적용단가 (원/㎡)	전유 면적(㎡)	산정가격(원)	결정가격(원)
1	2,579,132	1.00	0.99489	1.00	0.96	2,463,314	2,460,000	59.71	146,886,600	147,000,000

※ 산정가격을 십만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가격 결정함.

7. 기타 참고자료

가. 인근 평가전례

기호	소재지	전유면적(㎡) (대지사용권)	평가금액(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비고
E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14 주공아파트 411동 130*호	59.71 (47.96)	188,000,000	3,148,551	2023.01.24 (1998.04.06.)	경매
F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14 주공아파트 410동 100*호	59.71 (47.96)	115,000,000	1,925,975	2004.04.08 (1998.04.06.)	경매
G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14 주공아파트 409동 40*호	59.71 (47.96)	105,000,000	1,758,499	2007.10.18 (1998.04.06.)	경매
H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20 주공아파트 509동 150*호	59.95 (47.96)	120,000,000	2,001,668	2004.04.23 (1998.04.06.)	경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기호	소재지	대상물건의 동 호수	전유면적(m ²)	감정평가액(원)
1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14 주공아파트	410동 2층 205호	59.71	147,000,000
	합 계			147,000,000

2.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

본 감정평가액은 인근시세, 거래동향의 파악 등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산출하였으며, 평가전례 및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준가격으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으며, 물건의 안정성, 환가성, 시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 공동주택 토지·건물 배분비율표 적용 의견

공동주택 토지·건물 배분 비율은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작성한 2021.12.31.자 “공동주택 토지·건물 배분비율 작성 연구”에 게재된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배분 비율표를 참조 하였음.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1동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셋길 65	건물의 1914 주공아파 트 410동	표시) 아파트	철근콘크리트및 피씨조 평스라브 지붕 15층 아파트				
					1층	440.810		
					2층-4층 각층	439.599		
					5층-15층 각층	428.664		
					지층 대피시설	436.05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내)	2층 205호 철근콘크리트및 피씨조	59.71	59.71	147,000,000	공용면적 대지권 포함 평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69,164.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14	대		1. 소유권대지권	47.96			
(대지권의	종류)				----- 69,164.5	47.96		
							토지·건물 토 지 : 44,100,000 건 물 : 102,900,000	
합 계							₩147,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천안쌍용중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하는 주공아파트 제410동 제2층 제205호로서, 인근은 각종 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혼재하고 있으며, 주위 환경은 학교, 아파트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시내 버스 정류소가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피씨조 평스라브지붕 410동 15층 내 205호로
(사용 승인일1998.04.06)

- 외벽 : 몰탈위 페인팅
-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 창호 : 샷시 마감.

(4) 이용상태

아파트 1세대(방3, 거실 겸 주방, 욕실 겸 화장실 등)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 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등이 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쌍용3지구),
중로1류(폭 20m~25m)(2023-08-01)(중로 1-16)(접함), 중로2류(폭 15m~2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대보호구역(늘사랑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예랑유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쌍용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용암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늘사랑유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사항 미상임.

본건은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본건의 내부 상태는 표준적인 설비 및
이용상황등을 기재하고 평가하였으며, 호별 위치는 현황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니 경매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진행 및 참여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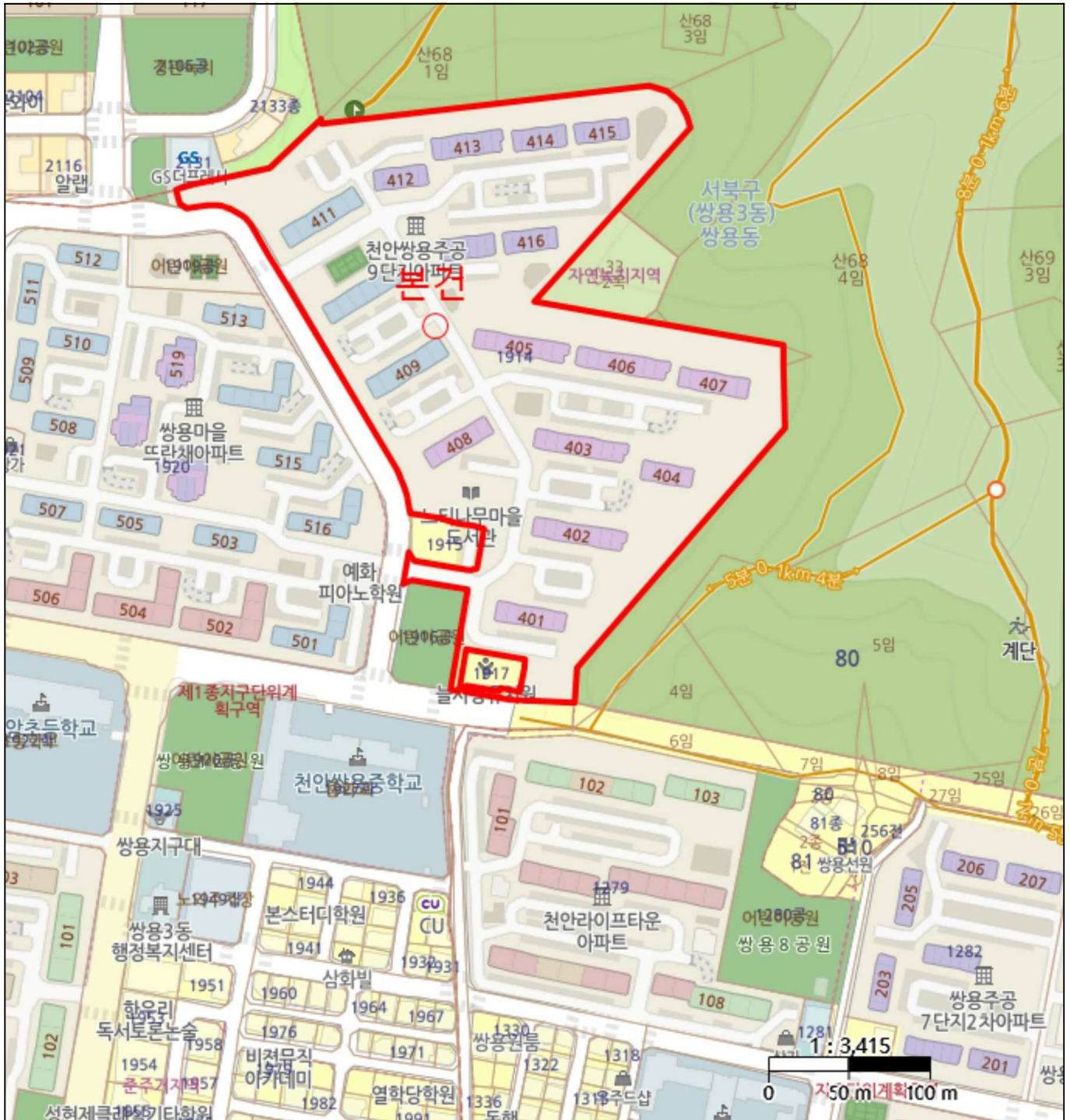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14 주공아파트 410동 2층 205호
-----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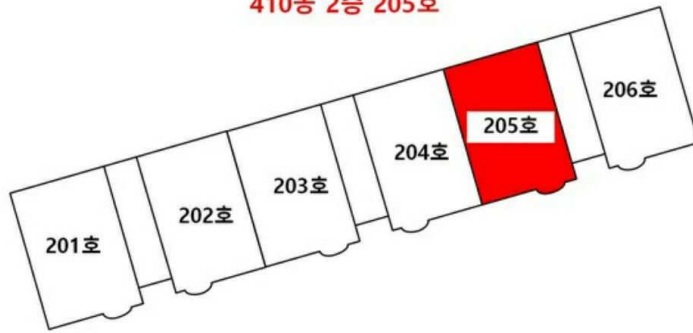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14 주공아파트 410동 2층 205호
-----	--



건물개황도

No Scale

[본 건]
주공아파트
410동 2층 205호



(호별 배치도)

No Scale



(내부구조도)



410 1 5,6



410



2



205